

●산업통상부고시 제2026-28호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3조 및 「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「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3월 27일

산업통상부장관

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

1. 시행일자

- 2026년 3월 27일 00시

2. 최고액 지정 대상

-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

3.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

※ 「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」 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최고액에서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.

-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보통휘발유      |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| 실내 등유      |
| 리터당 1,934원 | 리터당 1,923원    | 리터당 1,530원 |

-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보통휘발유      |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| 실내 등유      |
| 리터당 1,953원 | 리터당 1,942원    | 리터당 1,549원 |

4. 종전 고시의 폐지

-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「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(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-022호)」는 폐지한다.